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12.12.1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3 조 【구성】

위원은 이사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4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해임 및 충원】

1.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3. 이사회는 제 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 종료시까지 결원된 위원을 충원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12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구두, 기타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유·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 8 조의 2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위원장의 선임
3.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9 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권한】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제 11 조 【통지의무】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담당을 이에 보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 13 조 【기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부 칙 (2001.1.16)

제 1 조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1)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